



ANDREW M. CUOMO
Governor

Homes and Community Renewal

RUTHANNE VISNAUSKAS
Commissioner/CEO

확인 번호:

[Applicant Name]님 귀하

뉴욕주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(COVIDRRP)은 귀하의 임대 지원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했습니다. 귀하의 가구가 섹션 8 이나 다른 연방 또는 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이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거부 통지를 받으셨습니다. 추가 검토 결과 귀하의 COVIDRRP 신청서가 아래에 나열된 그 외 다른 사유에 따라 부적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
<INSERT DENIAL REASONS>

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이의 제기 및 거부에 관한 추가 정보는 HCR 웹 사이트 <https://hcr.ny.gov/crrp-translated-appeal-information>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.

프로그램의 정책에 따라 귀하는 신규 부적격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일 이내에 입증 문서 및 첨부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의 제기서와 입증 문서는 이의 제기 포털 <https://covidrentreliefappeals.hcr.ny.gov> 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의 제기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.

- 이의 제기 날짜,
- 성명,
- 현 우편 주소,
- 신청서에 기재된 기본 거주지 주소,
- 확인 번호(위에서 참조),
-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.

이의 제기 시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하는 모든 입증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.

도움이 필요하시면 (833) 499-0318 번으로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콜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아래 표에 나열된 프로그램의 비영리 파트너 단체 중 하나에서 신청 관련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보는 프로그램 웹 사이트 <https://hcr.ny.gov/rrp> 의 “문의 및 신청 지원(Contact Us & Application Assistance)” 탭을



ANDREW M. CUOMO
Governor

Homes and Community Renewal

RUTHANNE VISNAUSKAS
Commissioner/CEO

클릭하여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말씀 드립니다, 이의 제기서는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일 이내에 NY 코로나 19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.

이 편지의 한국어 번역본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.

繁體中文 / Русский / Kreyòl ayisyen / 한국어 / বাংলা

감사합니다.

NY 코로나 19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

Non-Profit	Phone Number	Area(s) Served
Arbor Housing and Development	(607) 654-7487	Allegany, Chemung, Livingston, Ontario, Schuyler, Seneca, Steuben, Tompkins, Tioga, Yates, and other surrounding counties
Catholic Charities Archdiocese of New York	(888) 744-7900	The Bronx
Catholic Charities Brooklyn and Queens	(718) 722-6001	Brooklyn, Queens
Help USA	(212) 400-7000	The Bronx
Housing Assistance Program of Essex County (HAPEC)	(518) 873-6888	Essex, Clinton, Franklin and Hamilton counties
Hudson River Housing	(845) 454-5176	Dutchess County
Long Island Housing Partnership (LIHP)	(631) 435-4710	Nassau and Suffolk counties
RiseBoro Community Partnership	(718) 366-3800	Bushwick, Brownsville, Bedford-Stuyvesant, Crown Heights, Greenpoint and Williamsburg
RUPCO	(845) 331-9860	Orange and Ulster counties



Homes and Community Renewal

ANDREW M. CUOMO
Governor

RUTHANNE VISNAUSKAS
Commissioner/CEO

Services for the UnderServed (SUS)	(212) 633-6900	All 5 boroughs; Nassau and Suffolk County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

거부 사유 설명

01 – 신청자가 제공한 서류가 불충분합니다.

신청자가 신청 시 제공한 서류는 소득 적격성 또는 임대료 부담을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으며, 신청자는 신청서 검토 중 요청된 입증 문서를 필요한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

02 – 신청자가 제공한 서류에서 하나 이상의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.

신청자가 신청 시 질문에 답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신청 검토 중 요청된 필수 서류를 필요한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

03 – 프로그램에 대한 소득 적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.

2020 년 3 월 1 일 이전 및 신청 당시,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해당 카운티 및 가구 규모에 대한 지역 평균 소득의 80% 미만이어야 합니다. 귀하의 카운티에서 지역 평균 소득의 80%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.

https://hcr.ny.gov/system/files/documents/2020/07/crrp2020_eligible_income_80ami.pdf

04 – 신청자는 세입자 또는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또는 다른 연방 또는 주 임대료 보조금의 수혜자인 것으로 보이거나 Mitchel Lama co-op 에 거주합니다.

신청 가구는 세입자 또는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또는 다른 연방 또는 주 임대료 보조금의 수혜자인 것으로 보이며, 이 경우 신청자의 임대료는 가구 소득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신청 자격은 세입자에 국한됩니다.

05 – 신청자는 지원 기간 동안 가구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.

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의하면, 지원자는 2020 년 3 월 1 일 이전에 비해 지원을 요청하는 2020 년 4 월 1 일과 2020 년 7 월 31 일 사이의 월 소득이 더 적어야 합니다.



ANDREW M. CUOMO
Governor

Homes and Community Renewal

RUTHANNE VISNAUSKAS
Commissioner/CEO

06 – 신청자가 프로그램 요구 사항인 높은 임대료 부담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.

신청자의 가구는 월 총 소득의 30%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.

07 – 가구의 실업 수당 데이터가 신청서와 상충됩니다.

신청자는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 수당을 받았으며 가구를 소득 적격 기준 이상으로 상향시켰습니다.

08 – 신분증 확인이 불가합니다.

신청자는 2020 년 3 월 1 일 현재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었거나, 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DMV 요구 사항에 따라 합산 최대 6 점을 추가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. <http://nysdmv.standard-license-and-permit-document-guide.sgizmo.com/s3>

09 – 신청자는 주 거주지가 뉴욕주인 세입자임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.

신청자는 임대 계약서(리스) 사본, 월 임대료 액수에 대한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, 임대 계약서 또는 기타 증빙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 임대료 증명서를 제출하여 뉴욕주 내 거주지에 대한 임대료 필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.

10 – 임대주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제출된 임대주 이름 및/또는 연락처 정보를 통해 유닛 소유권 확인 및 관련 세금 정보 수집이 가능해야 합니다.

11 – 신청을 철회했습니다.

신청자가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철회했습니다.

12 - 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프로그램 계산에 따라 보조금 금액은 0 이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신청서가 적격한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반영하거나 다른 주 기관에서 획득한 정보를 반영한 프로그램 계산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0 으로 계산되었으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13 – 신청자가 이전에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.

신청서가 적격한 것으로 결정되어 원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이 제공되었습니다. 신청자는 코로나 임대료 구제 연장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



ANDREW M. CUOMO
Governor

Homes and Community Renewal

RUTHANNE VISNAUSKAS
Commissioner/CEO

없습니다.

14 – 신청자가 중복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

신청자가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두 부 이상 제출했습니다. 한 부의 신청서만 심사합니다. 신청자가 원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및 연장된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모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연장된 코로나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첫 번째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심사합니다.